

안양시 청원경찰 관리 규정

제정 2016. 10. 20. 훈령 제658호
일부개정 2019. 11. 15. 훈령 제704호
일부개정 2022. 12. 30. 훈령 제739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일부개정 2024. 12. 31. 훈령 제757호(안양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정)
전부개정 2025. 11. 13. 훈령 제76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에 따라 안양시 소속 청원경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복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채용되어 안양시 중요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하는 경찰을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청원경찰의 정원·임용·배치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3. “복무총괄부서”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4. “감사부서”란 청원경찰의 비위조사, 징계요구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소속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청원경찰의 직무)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청사방호 및 출입자 통제 등 질서유지
2. 화재, 재난 등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
3. 청사 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 상태 확인
4. 경비 목적의 청사 내 차량확인 및 진입 제지
5.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

제4조(정원 관리) ① 청원경찰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

② 시장은 직무의 신설 또는 폐지, 행정조직의 변화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증원 또는 감축할 수 있다.

③ 법 제10조의6에 따른 당연퇴직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의 재정여건 및 해당 부서의 업무량 등을 검토하여 정원을 감축할 수 있다.

④ 정원을 조정할 경우에는 책정목적, 책정인원, 시 재원,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채용) ①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은 법 제5조제2항·제3항, 법 시행령 제3조 및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원경찰의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은 시장이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시험 시행은 안양시인사위원회 위원장이 관장한다.

제6조(배치) 시장은 필요시 인력상황을 고려하여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인사기록) 청원경찰의 인사기록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4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3조를 준용한다.

제8조(신분증) 청원경찰의 신분증 발급 및 반납 등에 관하여는 「안양시 공무원증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근무시간 등) ① 청원경찰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하며, 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청원경찰의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소속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근무일, 점심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①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한 경우에는 그 다음의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소속부서의 업무사정이

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를 한 토요일 또는 공휴일의 다음 정상근무일에 휴무하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③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상시근무체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도 정상근무를 할 필요가 있는 청원경찰에 대하여는 그 근무시간과 근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청원경찰은 소속 부서장의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청원경찰이 당직 및 비상근무 명령을 받은 때에는 청사 경비, 화재 및 그 밖의 위험에 대비하여야 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12조(출장) ① 소속 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교육) 소속부서의 장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청원경찰의 직무집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매월 4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전체 집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청원경찰의 직무와 관련된 지식·기술 및 능력배양을 위하여 필요한 직무교육
2.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교육
 - 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기교육
 - 나. 배치 및 작업내용 변경 시 필요한 교육
 - 다. 유해위험 작업 시 특별안전교육

제14조(휴가) 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② 청원경찰 휴가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휴직 및 명예퇴직) ①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은 법 제10조의7을 따른다.

②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보수 및 수당 등) 청원경찰의 보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청원경찰 관계 법령과 매년 경찰청에서 고시하는 「청원경찰 경비기준액」을 따른다.

제17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청원경찰의 보수를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을 봉급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력에 산입하여야 한다.

1.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의 경력
2. 「경비업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한 경력

제18조(제복착용) 청원경찰은 근무시간 중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19조(감독 등) ① 소속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직무수행과 복무를 지휘·관리·감독해야 하며, 관리·감사·복무총괄부서의 장도 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소속부서의 장은 청원경찰의 직무수행과 복무에 대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리부서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포상) 시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원경찰에게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21조(징계) 청원경찰의 징계는 법 제5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안양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에 따른다.

제22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원경찰법」, 「안양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안양시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25. 11. 13. 훈령 제76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안양시 청원경찰 인사 관리 규정」을 폐지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안양시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안양시 청원경찰 인사관리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 또는 이 규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청원경찰 정원표(제4조 관련)

(단위: 명)

부 서 명	정 원
계	14
본 청 소 계	10
총 무 과	7
안 전 정 책 과	1
시 민 봉 사 과	1
문 화 관 광 과	1
의 회 소 계	1
의 회 사 무 국	1
사 업 소 소 계	1
평 생 학 습 과	1
구 소 계	2
만 안 구 소 계	1
행 정 지 원 과	1
동 안 구 소 계	1
행 정 지 원 과	1